#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

나. 의안번호 : 제2325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04.02

라. 회부일자 : 2021.04.06

### 2. 제 안 사 유

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,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위임관리를 함에 따라 해당 음수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### 3. 주 요 내 용

가. 음수대 위탁관리 전면 시행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9조)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## 5. 검 토 의 견

### 가. 개요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의
'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' 조항 삭제에 따른 현행
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#### 나. 검토의견

- 1) 음수대 설치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 규정 삭제
-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은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 개정을 통해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 중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####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
제 9 조(관리)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.
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,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,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.
- ③ 제 6 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,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(이하 "수도 조례"라 한다)제 31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⑤ 수도조례 제 31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2)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 규정 마련
-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한 음수대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음수대를 무단철거하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이 삭제되어 음수대 무단철거나 정수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상실됨에 따라 별도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임.
-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 위임 관리로 일원 화하여 관리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체 부담함에 따라 음수대 무단철거 및 위생관리 미흡, 정수기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음수대 관리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